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국세청, 2024. 1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월) 개통했습니다.
  -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하여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니, 미리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목) 개통합니다.
  -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으며,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안내

## 참고 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내용

항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인적 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	
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금액	○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 관람료 사용분 포함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영화 관람료 사용분 포함	○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의료비 미구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 입학금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 후 수업료 포함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납입금액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교복구입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기부금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고향사랑기부금 포함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

\* △ : 제출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2**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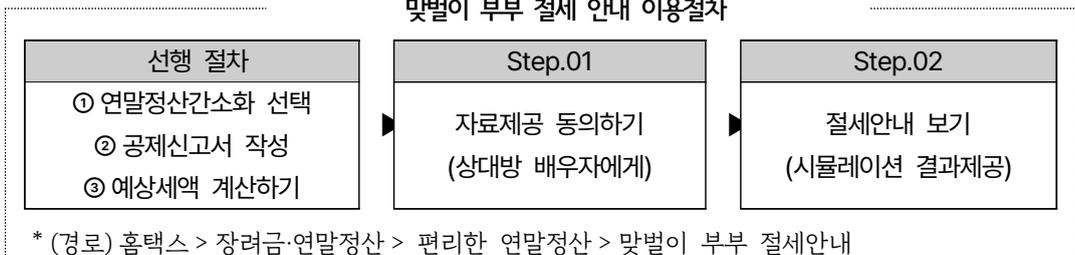
-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손택스'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이 종료되는 2004년생 자녀와 부모에게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합니다.

**참고 3**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절차**



\*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 (선행절차)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 (자료제공 동의하기)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
- (절세안내 보기)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

**절세안내 예시**

근로자 A는 연봉 1억 2천만원, 배우자 B는 연봉 7천만원으로, 부양가족은 자녀 3명과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총 7명임

☞ '절세안내 보기'를 활용해 최소 87만원 환급부터 최대 150만원 납부까지 128가지 사례를 확인하고 세부담이 가장 낮은 사례 1번으로 연말정산 하였음

\* 당초 공제신고서 작성분과 세부담이 동일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표시됨 (사례37)

**참고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

주요 서비스

종류		내용
근로자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작성</li> <li>*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li> </ul>
	간편제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li> <li>* 회사에서 간편제출 요구한 경우 이용 가능</li> </ul>
	예상세액 계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세액 자동계산 (충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가 입력 필요)</li> </ul>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결정세액 증감액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을 지원</li> </ul>	
회사	공제신고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 요청</li> </ul>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기초자료·공제신고서를 바탕으로 최대 2천명분의 지급명세서 생성</li> </ul>

**참고 5**

**주요 문답자료(FA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 ]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 15. 개통하며, 1. 15.~1. 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 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구분	내용	일정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4. 1. 7.
	(부득이한 경우)	'24. 1. 13. 22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4. 1. 15.~1. 18. 22시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 1. 15.~1. 17.
	최종 확정자료 제공	'24. 1. 20. 부터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4. 1. 20. 부터

##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공제구분		공제항목
소득 공제	특별	보험료(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 공제	특별	교육비 중 직업훈련비·대학원 교육비
		기부금 중 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기타	연금계좌

#### 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토)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영수증발급처 자료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 [ 고용보험료 간소화자료 6~9 ]

#### 6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 금액과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 7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된 고용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 원천공제한 금액(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으면 됩니다. 업주는 보수를 지급 할 때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고지한 보험료로 공제하는지 실제 지급한 보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에 따라,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와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간소화자료상 고용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지?**

-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에게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이며,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 고지한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 월별보험료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간소화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에 대해 고지한 월별보험료 금액만 제공됩니다.
- 따라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0~12 ]**

## 10

**'23.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취학 전 학원비 자료는 ① 자료추가 → ② 피교육자 선택 → ③ 공제종류 '초·중·고등학교' 선택 → ④ '공납금'에 지출금액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 1명의 자녀에 대해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교' 2개의 공제종류 선택할 수 없으니 위의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1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를 위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가 나의 급여, 공제금액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인지?**

-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제출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인적사항 등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기초자료 등록기간은 1.3.부터 3.11.까지이나,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월 중순까지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기초자료

근로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급여·상여·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등,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적연금), 건강·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비과세·감면 명세, 기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